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8. 6. 20.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년 6월 15일 박정자 의원 외 7인
- 나. 회부일자 : 1998년 6월 15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1998년 6월 15일 제56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정자 의원)

가. 제안이유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법률 제5537호)으로 인하여 지방의회 의원정수가 감소됨으로써 우리구의회 상임위원회 수 및 명칭, 위원정수, 소관업무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상임위원회 설치 수 조정
 - 현행 4개 상임위원회의 수를 3개 상임위원회로 축소
- 2) 상임위원회 일부 명칭 변경
 - 행정재무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시민보사 및 도시건설위원회를 사회건설위원회로 명칭 변경
- 3)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및 소관업무 조정
 - 별첨안 참조
- 4) 특별위원회 정수 조정
 - 현행 15인 이내를 11인 이내로 조정

다. 관련법규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개정법률(법률 제5537호)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2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준석)

박정자 의원 외 7명의 발의로 제안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상임위원회 설치 수를 현행 4개 위원회에서 3개 위원회로 축소 조정하고, 상임위원회 수가 축소됨으로 인하여 위원회별 소관 업무의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므로 소관 업무에 걸맞는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의원정수 축소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재조정했으며, 아울러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도 11인으로 조정한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으며, 우리구 위원회조례를 상위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안 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3
----------	-----

발의년월일 : 1998년 6월 15일

발의자 : 박정자 의원 외 7인

1. 제안이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법률 제5537호)으로 인하여 지방의회 의원정수가 감소됨으로써 우리구의회 상임위원회 수 및 명칭, 위원정수, 소관업무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상임위원회 설치 수 조정
 - 현행 4개 상임위원회의 수를 3개 상임위원회로 축소
- 나. 상임위원회 일부 명칭 변경
 - 행정재무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시민보사 및 도시건설위원회를 사회건설위원회로 명칭 변경
- 다.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및 소관업무 조정
 - 별첨안 참조
- 라. 특별위원회 정수 조정
 - 현행 15인 이내를 11인 이내로 조정

3. 관련법규

- 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개정법률(법률 제5537호)
-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운영위원회 9인 이내
2. 행정위원회 11인 이내
3. 사회건설위원회 11인 이내

제3조 제②항중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운영위원회
 -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위원회
 - 가. 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총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3. 사회건설위원회
 - 가. 시민생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도시정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8조 제⑤항 특별위원회 위원정수 “15인을 초과”를 “11인을 초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개 정 안
<p>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의회 내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영위원회 9인 2. 행정재무위원회 11인 이내 3. 시민보사위원회 11인 이내 4. 도시건설위원회 11인 이내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p> <p>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책무를 행한다.</p> <p>② 상임위원회별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재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총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시민보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시민생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도시건설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도시정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p>제8조(특별위원회)</p> <p>⑤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15인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의회 내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영위원회 9인 이내 2. 행정위원회 11인 이내 3. 사회건설위원회 11인 이내 4. 삭 제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p> <p>① 현재와 같음</p> <p>② 상임위원회별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현재와 같음 나. 현재와 같음 다. 현재와 같음 2. 행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총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사회건설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시민생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도시정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삭 제 <p>제8조(특별위원회)</p> <p>⑤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11인을 초과할 수 없다.</p>